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상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85 발의연월일: 2024. 10. 14.

발 의 자:유상범·곽규택·조배숙

주진우 · 구자근 · 장동혁

서명옥 · 박형수 · 송석준

박준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등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들은 SNS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음. 통상 수십 혹은 수백명이 하나의 채팅방에 모여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, 저장 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형태로 범행들이 이뤄지고 있음.

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온라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, 텔레그램과 같이 사업자가 사법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SNS를 이용 한 범죄의 경우 증거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움. 불법·허위영 상물 제작·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(이른바 '패킷 감청')하면 사업자의 도움 없이도 증거확보가 가능하나, 현행법 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

범죄들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 중 제11조, 제15조의2의 죄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규정된 범죄 중 제14조, 제14조의2의 죄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第5條(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	第5條(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		
措置의 許可要件) ①통신제한조	措置의 許可要件) ①		
치는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劃			
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			
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			
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			
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의			
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이 어려			
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			
다.			
1. ~ 12. (생 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13. 「아동・청소년의 성보호에		
	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범죄		
	중 제11조, 제15조의2의 죄		
	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		
	에 관한 특례법」에 규정된		
	범죄 중 제14조, 제14조의2의		
	<u> 죄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